

① 개정 개요

개정 전	개정 후
<input type="checkbox"/>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 상 공정시장가액비율 표기 <input type="radio"/>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 - 건축물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× <u>60%</u>	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정시장가액비율 표기 개선 <input type="radio"/>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로 표기 - 건축물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×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0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율

□ 개정 내용

-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 뒷면의 지역자원시설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09조제1항제2호를 인용하도록 서식 개선

□ 적용 요령

-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

| 지방세법 시행규칙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